

『전북지역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2023년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라북도 내 소재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형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기업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개 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출민간역량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형 기업 육성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3. 11. 30.(수)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및 3대 주력산업(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관련 기업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18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이상 필수 매칭 / VAT 별도, 기업부담
 - 총사업비(100) = 지원금액(90) + 민간부담금(10)
 - ※ (예시) 기업별 20백만원 = 지원금 18백만원 + 부담금 2백만원

<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대상 및 규모 >

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기업
수출주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전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전년도 수출액 300만불~1,000만불

※ 수출초보기업은 선정기업 내 50% 이상 필수 선정 · 지원 함

※ 수출초보기업은 직접수출실적증명서만 인정/ 주력, 강소는 간접수출까지 인정

○ 지원형태 : 아래의 3개 유형 중 택 1

구 분		지원 조건
공통 필수		수출친구맺기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http://gbiz.okta.net) ※ 별첨1. 수출친구맺기 참고자료를 따름
컨소시엄형	세계한인 무역협회 (OKTA)연계형	· OKTA((사)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14개 테크노파크 대상 공급기관(OKTA회원) 당 컨소시엄 구성은 3개 이내 가능
	전문무역상사 연계형	· KITA(한국무역협회) 등록된 공인 전문무역상사 ↔ 기업 간 사전매칭 후 지원 · 전문무역상사 조회 : http://ctc.kita.net · 전문무역상사가 OKTA 회원사일 경우 OKTA 연계형으로만 신청 가능
단독형	기업 주도형	· 신청기업의 수출직접지원이 가능한 공급기관(업) ↔ 기업 간 사전 매칭 후 지원 · '23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 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현재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은 사전매칭 후,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후 지원

추진주체 역할 및 기능

- 수출희망기업 : 전북지역 소재 수출희망 중소기업으로 사업 주관
- OKTA 회원, 전문무역상사 : 기업의 수출지원 계획 수립 및 수출을 위한 직접지원
 - OKTA 회원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등록 회원사 (수출친구맺기 홈페이지에서 검색)
 - 전문무역상사 : 전국 전문무역상사와 매칭(지역무관)
- 공급기업(관) : 기존 수출계약을 기반으로 기업의 요구맞춤형 제품개선 및 수출 직접지원 가능 기업(관)
(주관기관 소재지 외 타 지역 참여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프로그램(안)

< 수출 프로그램 메뉴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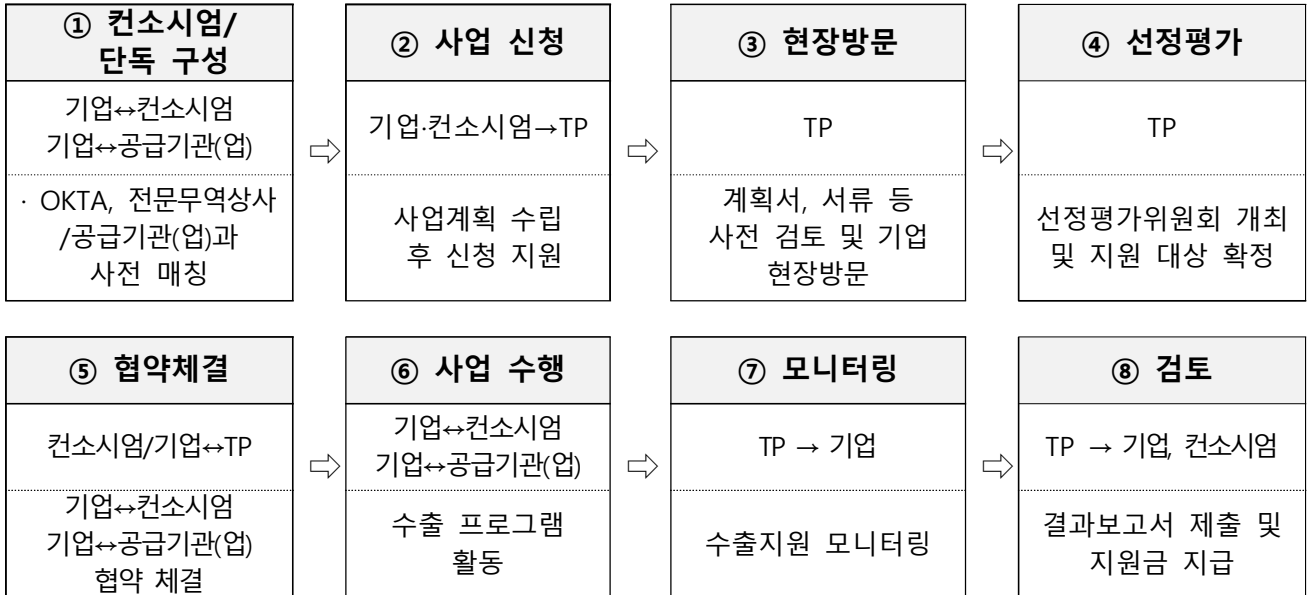
구 분	지원 내용	지원(최대)금액
타당성 및 시장 조사	○ 해외 현지 시장성 테스트 지원 - 온·오프라인 마케팅(판매, 판촉전, 전시, 바이어 반응 측정 등)을 통한 현지 조사 - 기관, 연구, 논문, 개인 자료 등 모든 활용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차용한 자료의 양은 보고서 전체 분량의 20% 이내로 제한 - 표절방지시스템(카피킬러 등) 통하여 표절을 20% 이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 있을 수 있음	7백만원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최대)금액
유통채널 입점대행	○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대행 및 컨설팅 지원 - 온라인 : 국가별 유력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입점(판매자 등록 등) 대행 및 컨설팅 - 오프라인 : 국가별 백화점, 마트, 면세점,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입점 대행 및 컨설팅	7백만원
해외인증	○ 국가별 제품인증 및 허가 취득 - 사업기간 중 인증서 발급 불가시 불인정	5백만원
전시회	○ 전시회 지원비 ※ 우대 : 베트남 호치민 '2023 MEGA US EXPO' 참가기업 - 참가비, 부스비, 장치임대료, 부스 디자인 및 부착물 제작 비용 등 포함	8백만원
바이어미팅	○ 구매의향 보유 바이어 온라인 미팅 및 오프라인 출장비 - 구매의향보유 바이어 상담 대행 및 해외 출장비(항공료) 지원 - 항공료: 항공이동 소요시간이 50분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참여인력 출장자 1인에 한함(옥타연계형의 경우 옥타회원 참여인력만 가능) - 온라인의 경우 [새싹기업-공급기관-바이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첨부-2. 온라인 바이어미팅 기준단가」를 따름 - 추후 당해연도 구매의향서 제출 필수	6백만원
샘플발송	○ 수출주력제품 샘플 발송비 - 추후 사업기간 내 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수 - 옥타연계형의 경우 수출제품 마케팅활용 샘플구입비 일부 지원	4백만원
통·번역	○ 수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통번역 목적 서비스에 한함, 홍보물 등 제작 비용 미포함 -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등 통번역 전반 유사 서비스	2백만원
홍보물제작	○ 수출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웹페이지 제작 등 - 번역비용 제외, 사업계획서 신청 기준 제품과 국가에 한함	5백만원
기술지원	○ 수출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제품고급화 등 기술지원	6백만원
기타	○ 그 외 컨설팅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TP 협의

○ 안내사항

1. 지원프로그램(안)은 예시로 수출새싹기업이 필요한 지원항목에 대해서 작성하며 내용 및 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타당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3. 부가세 및 각종 세금(TAX)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4.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출초보기업 지원사업이 주관하는 운영 프로그램(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수출교육 외)에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

□ 지원절차



○ 세부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 지급	<table><tr><td>제출</td><td>1. 결과보고서 2. 집행내역서</td><td>검토</td><td>1. 결과보고서 2. 집행내역서</td><td>지급</td><td>지원비 지급</td></tr><tr><td colspan="2">OKTA형→TP</td><td rowspan="3">TP</td><td rowspan="3">TP</td><td colspan="2">TP→OKTA 사무국</td></tr><tr><td colspan="2">전문무역상사형→TP</td><td colspan="2">TP→전문무역상사</td></tr><tr><td colspan="2">주도형→TP</td><td colspan="2">TP→기업 또는 공급기관(업)</td></tr></table> - 사업비는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이행보증보험 발급 시 선 지급 가능	제출	1. 결과보고서 2. 집행내역서	검토	1. 결과보고서 2. 집행내역서	지급	지원비 지급	OKTA형→TP		TP	TP	TP→OKTA 사무국		전문무역상사형→TP		TP→전문무역상사		주도형→TP		TP→기업 또는 공급기관(업)	
제출	1. 결과보고서 2. 집행내역서	검토	1. 결과보고서 2. 집행내역서	지급	지원비 지급																
OKTA형→TP		TP	TP	TP→OKTA 사무국																	
전문무역상사형→TP				TP→전문무역상사																	
주도형→TP				TP→기업 또는 공급기관(업)																	
사업비 정산	- (OKTA) OKTA 사무국을 통한 사업비정산 - (전문무역상사, 기업주도) 상황에 따라 전북TP에서 지정한 위탁 정산 회계 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할 수 있음 - TP에 협약기간 내 지원기업 전체에 대한 활동 및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지출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 후 지급																				

4 평가 방법

□ 평가방법

① 현장방문	⇒	② 선정평가
계획서, 서류 등 사전 검토 및 기업 현장방문		기업 신청서, 계획서, 제출 일체 서류 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및 지원금 확정

□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기업 역량 (30)	해외 진출의지	15	○ 대표자의 수출 의지 및 노력, 적극적 활동 추진 여부 등
	수출역량	15	○ 수출유망품목 보유 및 경쟁력, 기술수준 등 적합성 ○ 수출 타깃 국가 설정, 시장에 대한 사전파악 여부 ○ 보유 국내외 규격인증, 수출계약 성사 및 진행 여부 등
사업성 (40)	지원내용의 타당성	15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전략 적정성 ○ 대외환경에 따른 사업 수행의 적정성
	시장 전망	15	○ 수출타깃 국가 진출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산출근거 타당성
기대 효과 (30)	실적 가능성	15	○ 수출실적, 매출, 고용 등 발생 가능성
	사후 활용성	15	○ 사후 활용방안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합 계		100	

※ 선정 평가위원회에 따라, 지원신청 프로그램 또는 신청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5 일정 및 방법

□ 일 정

- 공고기간 : '23. 05. 18. ~ '23. 6. 13. (4주간)
- 접수기간 : '23. 05. 31. ~ '23. 6. 13. 18:00시 까지, (2주간)
- 현장평가 : '23. 6월 4주차

- 선정평가 : '23. 6월 5주차
- 결과통보 : '23. 7월 초
- 협약체결 : '23. 7월 중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사업 신청 + 오프라인 서류 제출
 - Step1)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시스템 내 사업 신청
 - (홈페이지) <https://www.jbexport.or.kr/>
 - ※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수출사업 공고 현황에서 신청 가능
 - Step2)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이메일 전송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4층 지역균형사업팀
 - (이메일) leemj@jbtp.or.kr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전,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필수
 - ※ 온라인 사업신청을 완료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 서류를 공고 마감일시까지 사업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발송소인까지 인정)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1. [붙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에 관한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참여 확약서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경우)
	3. 최근 3년간(20년, 21년, 22년) 재무제표(22년은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활용 가능)
	4. 최근 3년간(20년, 21년, 22년)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류 - (직접수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간접수출) KTNET 발행본(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5. (무역상사형)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제출(한국무역협회 발급) (기업주도형) 2023년 구매조건부 수출계약서 및 구매주문서(PO) 제출
선택	6. 회사 및 제품 홍보물 (브로슈어, 카다로그 등)
	7.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서류(특허,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등)

※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총 6부(원본1부/사본5부)를 지정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누락 등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기업에 있습니다.

□ 문 의 처

- (담당자)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 Tel.063-219-2126
- (수출친구맺기문의) 세계한인무역협회 사무국 Tel.02-571-5220

6 기타 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준수하오니 사업신청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 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 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심의는 별도의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결과 미선정 기업은 이메일 통보 외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과제종료 후 만족도, 지원성과 조사 등 사업 지원 대가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 관리 ·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 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해야 함
-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 타당성 및 시장조사 보고서 등 제출된 모든 보고서에 활용한 자료는 반드시 모든 출처를 명시해야하며 활용 자료 양은 전체분량의 20% 이내로 제한. 표절방지시스템(카피킬러 등) 통하여 표절률 20% 이하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 당해연도 다른 기관에서 유사 수출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
 -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기부, 해외지사화 사업 등 산업부,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 전라북도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2020~2022년) 수혜기업의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연도 및 이후 수출성과(수출면장, 계약서 등), 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최근 2년('20 ~ '21년) 연속, 유동비율이 30%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의 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수출실적 허위 기재·제출 등)
- 그 밖에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거나 중복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및 발견되는 경우 평가, 지원 제외할 수 있습니다.